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2-101
- 나. 제안자: 신중갑 의원 외 13명
- 다. 제안일자: 2022년 9월 13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2년 9월 14일(수)

2. 제안사유

마포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적용대상 규정(안 제3조)
- 다.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회의록의 공개(안 제5조)

4. 관계법령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5. 입법예고: 2022. 9. 13. ~ 9. 19.(제출된 의견 없음)

6. 검토보고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작성된 회의록의 공개 방법을 규정하여 제1항에서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어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할 것임.
- 그밖에 **안 제6조**, **안 제7조**는 회의록의 공개 사전고지 및 회의록 보존에 관한 규정임.

다. 종합 검토의견

- 그동안 마포구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¹⁾는 회의 내용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에 따른 통일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투명한 행정의 구현으로 열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1) 2022년 9월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위원회는 총 122개이며 상설 111, 비상설 11로 구분됨.

- 다만, 제5조제4항 다른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 회의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둔 것은 자칫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무색케 하거나 회의록 공개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4항의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임.

일반 현황

○ 상설개최 여부

구 분	합계	상설	비상설	비 고
위원회 개수	122	111	11	부속 위원회 (마포혁신교육지구실무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위원회 위원 수: 당연직(452명), 위촉직(966명)

국별 현황

합계	감사 담당관	마포번가 연구단	행정 관리국	기획 재정국	관광 일자리국	복지 교육국	도시 환경국	교통 건설국	보건소
122	4	4	21	16	11	33	16	10	7